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정정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19-57

발의연월일: 2019. . .

발 의 자: 정정희, 이충현, 경기문, 송순효 박성호, 박주선, 황동현, 윤유선 강선영, 김동협, 이의걸, 김현희 송영섭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초등학생 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
다.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및 돌봄 서비스(안 제5조~제6조)

라. 돌봄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(안 제7조~제8조)

마. 협의회 구성 등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(400,922천원)

다. 합　　의: 생활보장과

라. 기　　타

(1) 입법예고(2019. 8. 14. ~ 8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돌봄 아동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,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.
2. “방과 후 돌봄”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말한다.
3. “돌봄 서비스”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,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“돌봄 시설”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)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
2.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
4. 방과 후 돌봄 관련 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
5.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 (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)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
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3.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
4. 돌봄 민·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
5.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
6.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 (방과 후 돌봄 서비스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지원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

제7조 (돌봄 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강서구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”(이하 “돌봄 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자녀 가구,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(이하 “시설 이용 아동”이라 한다)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

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

2. 아동의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비용

3.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

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2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차상위장애수당 또는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

⑤ 구청장은 돌봄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

제8조(돌봄 시설의 위탁·운영)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 (지역돌봄협의회 설치)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(이하 '협의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방과 후 돌봄사업 종합계획 심의·자문
2.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
3.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 (협의회 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·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, 가족정책업무 담당과장, 교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
2. 관내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
3.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돌봄 사업 관계 공무원
4.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⑤ 협의회는 민·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 (회의운영 등)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

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기타 위원의 해촉·제척·기피·회피 및 회의록의 작성, 회의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 (보고 및 승인)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
제13조 (포상)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민간협력 등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, 기관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